|  |  |  |
| --- | --- | --- |
|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방법**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82호<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방법>이 2015년 11월 6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2016년 4월 28일제1장 총칙제1조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업무를 규율하고 개항장 위생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출입국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항장의 위생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개항장 위생감독방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국경 개항장에서 식품 생산(항공기 기내식 포함), 식품 판매(출/입국 교통수단 식품 공급 포함), 요식 서비스(노점상 제외), 식수 공급, 공공장소 경영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하 '생산경영자'로 통칭)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제4조 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 공공위생안전에 대해 책임지며 생산경영 활동을 취급함에 있어 법률•법규 및 공공위생안전표준에 따라야 한다.제5조 생산경영자는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이하 '위생허가'로 약칭)를 신청하여 국경개항장위생허가증(이하 '위생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한 후에야 관련 경영 또는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6조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률•법규 및 규장에 규정한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편민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7조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생허가 기록 관리제도 및 행정허가 결과 공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위생허가 실시 과정에 발생한 위법행위를 감독,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제2장 허가 요구사항제9조 국경 개항장에서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식품안전표준과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1)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저장, 판매 등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독•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원료, 부자재 등은 해당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2)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생산경영 설비 또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오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합리적인 설비 분포와 제조공정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식용 식품, 원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물질, 불결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식품의 저장, 운송 및 상하역에 사용되는 용기, 공구 및 설비는 안전, 무해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등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과 유독물, 유해물과 같이 저장,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5) 식품안전 교육을 받은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식품안전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업체의 실제 상황과 어울리는 식품안전 보장제도를 갖추어야 한다.(6) 사용하는 용수는 국가에서 규정한 생활식수 위생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제10조 식수 공급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1) 생활식수 위생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2) 수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생활식수 위생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3) 급수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4) 급수시설의 규정된 위생보호 거리 내에 오염원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생활식수 저장탱크는 전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비 생활식수와 연결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안전하게 밀폐되어야 하고 필요한 위생보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5) 생활식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급수설비 및 급수용품은 국가의 관련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독, 무해하며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6) 감관지표와 잔류염소, PH치 등 일상 이화학 지표에 대한 테스트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7) 자가 수원(水源)을 보유한 급수시설은 도농공공급수망과 그 어떠한 연결이 있어서는 아니된다.(8) 2차 급수시설은 도농공공급수망과 그 어떠한 연결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특수한 사정으로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압식 급수 저자탱크를 사용하여야 한다.(9) 집중식 급수의 경우 수질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11조 국경 개항장에서 공공장소의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1) 고정의 영업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규모, 경영항목에 근거하여 세척, 소독, 청소, 세면 등 시설•설비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하고 제반 시설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해당 공공장소의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관리인력을 두어야 하며 위생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위생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3) 수질이 국가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4) 효율적인 의학 매개물 생물 통제 조치 및 폐기물 보관 전문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5) 실내 공기 품질과 미기후 및 제공하는 용품, 용구는 국가의 위생표준과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집중 공기조절•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집중공기조절•환기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6) 눈에 띄는 금연 경고문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2조 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제3장 허가 절차제1절 신청제13조 국경 개항장에서 고정의 독립 경영장소를 보유하여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 서비스, 식수 공급, 공공경영장소를 경영하는 생한경영자를 하나의 위생허가증 발급 단위로 하여 단독으로 위생허가를 신청한다.제14조 국경 개항장에서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위생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허가증 신청서;(2) 영업집조 복사본;(3)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자격증명 및 신분증명(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4) 본 업체의 실제 상황과 어울리는 식품안전 보장이 가능한 위생관리제도(환경청결위생관리제도, 식품안전자기검사관리제도,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 종업원건강관리제도 등 관련 서류 포함)(5) 기타 서류.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장소 및 그 주변 환경의 평면도, 생산•가공 기능 구역 분포도, 생산공정 흐름도, 설비 분포도; 식품 생산 설비•시설 리스트; 식품 생산 집행 표준;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가 발행한 생산용수 위생검측보고서; 생산•가공과정식품안전관리제도, 출고검사기록제도, 불합격품관리제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 기내식 공급업체의 경우 콜드체인 운송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운송 전문차량, 냉동냉장 시설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식품 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 판매와 어울리는 경영시설 공간 분포도, 경영시설•설비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 교통수단의 식품 공급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콜드체인 운송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운송 전문차량, 냉동냉장 시설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동판매설비의 제품합격증명과 구체적인 설치 위치, 경영자의 명칭•주소•연락방식•식품경영허가증 공시방법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장소 및 설비 분포도, 가공 절차, 위생시설 등의 약도;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가 발행한 용수 위생검측보고서, 시설•설비위생관리제도, 세척소독제도, 가공조작규칙, 식품첨가제관리제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 배달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 보온배송 또는 콜드체인 운송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운송 전문시설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체급식하는 비(非)영리성 식당의 경우 영업집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단체급식 장소의 적법한 사용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식수 공급에 종사하는 경우 위생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위생허가증 신청서;(2) 영업집조 복사본;(3)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자격증명 및 신분증명(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4) 본 업체의 위생관리제도 (종업원 위생교육, 전문직(겸직) 위생관리인력, 급수 설비•시설 유지보수, 위생관리기록 등 관련 내용 포함);(5) 식수 위생안전과 연관된 제품의 위생허가 비준문서;(6) 평면 분포도, 설비 분포도, 관망 평면 분포도, 관망 계통도 등을 비롯한 설계도와 관련 문자설명;(7)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가 발행한 1년 내 수질검측 합격보고서;(8) 자가 수원(水源)을 보유한 경우 용수 가공절차 서류를 제공하야 함.제16조 국경 개항장에서 공공장소를 경영하는 경우 위생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허가증 신청서;(2) 영업집조 복사본;(3)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자격증명 및 신분증명(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4) 본 업체의 위생관리제도 (종업원 위생교육, 전문(겸)직 위생관리인력, 급수 설비•시설 유지보수, 공공장소 건강위협 사고 긴급대응, 위생관리기록 등 관련 내용 포함);(5) 영업장소 평면도 및 위생시설 평면 분포도;(6) 공공장소 위생검측 보고서 또는 위생평가 보고서;(7) 집중 공기조절•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집중 공기조절•환기 시스템의 위생검측 보고서 또는 위생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법률•법규에 기타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으로 약칭)은 현장 제출 또는 우편, 전보(電報), 전신(電傳),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우편 등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제2절 접수제19조 검사검역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위생허가 신청을 처리한다.(1)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불접수를 고지하여야 한다.(2)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불접수 결정을 내림과 더불어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3) 신청서류상에 현장 즉석에서 정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현장 즉석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5) 신청사항이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비 및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며 또는 신청인이 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보정하여 제출한 경우 위생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제20조 검사검역부서는 서면 형식으로 위생허가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신청 접수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신청 불접수 결정서를 발행한다.(3)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정 고지서를 발행한다.제21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중복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절 심사제22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3조 신청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검사검역부서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시험에서 합격한 2명 이상의 검사검역부서 위생감독 업무인력으로 위생허가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해당 법률•법규 및 위생안전표준을 근거로 기업의 위생 상황, 설비•시설 및 품질안전 통제틍력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감독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시정 또한 불가능한 경우 현장심사팀은 불허가를 제안하여야 한다. 현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현장심사팀은 신청인에게 기한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현장심사는 최장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4절 결정과 송달제25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결과와 현장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행정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허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인에게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불허 결정서를 송달하고 이와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26조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제반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1부는 검사검역부서가 보관한다. 송달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문서는 하나의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제27조 검사검역부서는 이미 종결된 위생허가 사항의 관련 위생허가 서류를 적시에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제5절 기한과 공시제28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현장심사 시간과 시정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특수한 사정으로 허가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의 이유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29조 검사검역부서는 허가사항, 근거, 조건, 절차, 기한 및 구비서류 목록과 위생허가증 신청 시범문서 등을 접수 업무 현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위생허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제6절 변경, 갱신, 재발급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경영자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검사검역부서(이한 '원(原) 증서발급기구'로 약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 경영범위가 변경되었거나 주소 번지수가 변경된 경우(실제 경영장소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2) 기능 분포, 제조공정 절차, 시설•설비가 변경되어 식품안전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원(原) 증서발급기구는 변경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신규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며 기존 위생허가증의 번호와 유효기한은 그대로 유지한다.제31조 생산경영자는 위생허가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原) 증서발급기구에 서면으로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후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신규로 위생허가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제32조 위생허가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허가증 신청서;(2) 기존 위생허가증 복사본;(3)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류의 변경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변경된 경우 관련 서류를 보충하여야 함).제33조 원(原) 증서발급기구는 위생허가증 갱신 신청을 접수한 후 기존에 허가한 경영장소, 기능 분포, 제조공정 절차, 시설•설비 등의 변경 여부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 신규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제34조 생산경영자는 변경, 갱신된 신규 위생허가증 수령 시 기존 위생허가증을 원(原) 증서발급기구에 반납하여야 한다.제35조 생산경영자는 위생허가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60일 내에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원(原) 증서발급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제7절 종료, 취소, 말소제36조 검사검역부서는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위생허가의 처리를 종료하여야 한다.(1)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위생허가의 취득이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2)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본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신청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청인이 위생허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5) 법에 의거하여 위행허가의 처리를 종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이 취득한 위생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검사검역부서의 업무인력이 위생허가 승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위생허가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에 정해진 직권을 초월한 경우;(3) 위생허가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인에게 위생허가를 승인한 경우;(5) 신청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위생허가증을 사취한 경우;(6) 법에 의거하여 위생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위생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함과 더불어 공시하여야 한다.(1) 위생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3) 피허가인이 위생허가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4) 위행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취소, 철회되었거나 위생허가증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생허가 사항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6) 법률•법규에 규정한 위생허가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제39조 위생허가의 근거로 삼은 법률•법규•규장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행정허가 승인의 근거로 삼은 객관 정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사유로 인해 피허가인이 취득한 행정허가의 변경 또는 철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허가를 승인한 검사검역부서가 행정허가 변경 또는 철회 결정을 내린다.제4장 감독관리제40조 위생허가증의 양식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제41조 국경 개항장 범위 내에서 임시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취급하는 경우 임시 위생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임시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반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42조 위생허가증은 통일적으로 컴퓨터로 인쇄하고 통일적인 15자리수의 번호를 사용하되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증서발급기구 번호(4자리) + 연도 번호(뒤 2자리) + 분류 번호(5자리) + 증서 일련번호(4자리).분류 번호의 첫번째 자리수는 식품 생산을 대표하고 두번째 자리수는 식품 유통(교통수단 식품 공급 포함)을 대표하며 세번째 자리수는 요식 서비스를 대표하고 네번째 자리수는 생활식수 공급을 대표하며 다섯번째 자리수는 공공장소를 대표한다. 종사하는 경영유형은 숫자 '1'로 표시하고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영유형은 숫자 '0'으로 표시한다. 증서 일련번호는 분류하지 아니하는 증서의 일련변호를 의미한다.제43조 위행허가증의 변조, 임대, 대여, 불법양도, 매매를 금지한다.생산경영자는 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경영하여야 하며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위생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여야 한다.제44조 상급 검사검역부서는 하급 검사검역부서가 위생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하급 검사검역부서에 기한부 시정 또는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제45조 검사검역부서와 그 업무인력은 위생허가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생산경영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검사검역부서는 규정을 어기고 위생허가를 실시한 관련 정황을 제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제5장 법률책임제46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경위의 경중에 따라 2,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제47조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요식 서비스, 식수 공급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아래의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진실된 상황을 숨긴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 신청을 불접수하거나 기각하고 경고를 주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위생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위생허가를 취득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신청인은 3년 내에 위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3) 유효한 위생허가증을 변조, 임대, 대여, 불법양도, 매매한 경우 바로 위생허가증을 취소하며 담당 주관인력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요식 서비스, 식수 공급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관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제48조 공공장소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해당 처벌을 실시한다.(1) 법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영업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경영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① 무단 영업으로 인하여 검사검역부서로부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② 무단 영업 시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③ 변조, 임대, 대여, 불법양도, 매매, 위조된 위생허가증으로 무단 영업한 경우;④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영 활동의 진실된 상황을 숨기거나 진실된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아래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2,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의 위생 품질이 위생표준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위생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의 공기, 미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 용품•용구 등에 대한 위생검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② 규정에 따라 고객 용품•용구를 세척, 소독하지 아니하거나 고객 용품•용구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일회용 용품•용구를 중복사용한 경우.(3) 경영자가 건강위협 사고 발생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되거나 사고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거짓을 보고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위생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제49조 검사검역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위생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책임을 묻는다.제6장 부칙제50조 이 방법에서 국경 개항장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화물, 컨테이너, 교통수단, 물품 및 우편물이 입국 또는 출국하는 국제 관문과 입국 또는 출국하는 여객, 수화물, 화물, 컨테이너, 교통수단, 물품 및 우편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구역을 지칭한다.이 방법에서 출입국 교통수단을 위한 식품 공급이라 함은 항고기 기내식 공급을 제외한 기타 국제통행 교통수단(예를 들어 선박, 열차 등)을 위하여 식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제51조 이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산경영자가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국경 개항장 식품생산경영업체 위생허가증>, <국경 개항장 서비스업 위생허가증>은 그 유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표된 규정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  |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82号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已经2015年11月6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7月1日起施行。局 长2016年4月28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规范国境口岸卫生许可工作，加强口岸卫生监督管理，保护出入境人员健康，维护口岸卫生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境口岸卫生监督办法》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适用于国境口岸从事食品生产（含航空配餐）、食品销售（含入/出境交通工具食品供应）、餐饮服务（食品摊贩除外）、饮用水供应、公共场所经营的单位或者个人（以下统称生产经营者）。 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统一管理全国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部门（以下简称检验检疫部门）负责所辖区域内的国境口岸卫生许可及监督管理工作。 第四条 生产经营者对其生产经营食品的安全、公共卫生安全负责，应当依照法律、法规以及食品和公共卫生安全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 第五条 生产经营者应当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申请国境口岸卫生许可（以下简称卫生许可），取得国境口岸卫生许可证（以下简称卫生许可证）后方可从事相关经营或者服务活动，并依法接受检验检疫部门监督。 第六条 检验检疫部门实施卫生许可应当符合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权限、范围、条件和程序，遵循公开、公平、公正、便民的原则。 第七条 检验检疫部门应当加强对卫生许可过程的监督检查，建立卫生许可档案管理制度及行政许可结果公示制度。 第八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监督、举报卫生许可实施过程中的违法行为，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核实、处理。第二章 许可要求 第九条 从事国境口岸食品生产、食品销售、餐饮服务的，应当符合国家食品安全标准及下列要求：  （一）具有与生产经营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食品原料处理和食品加工、包装、贮存、销售等场所，保持该场所环境整洁，并与有毒、有害场所以及其他污染源保持规定的距离；使用的原、辅材料等应当符合相应的国家标准、行业标准及有关规定； （二）具有与生产经营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生产经营设备或者设施，有相应的消毒、更衣、盥洗、采光、照明、通风、防腐、防尘、防蝇、防鼠、防虫、洗涤以及处理废水、存放垃圾和废弃物的设备或者设施； （三）具有合理的设备布局和工艺流程，防止待加工食品与直接入口食品、原料与成品交叉污染，避免食品接触有毒物、不洁物； （四）贮存、运输和装卸食品的容器、工具和设备应当安全、无害、保持清洁，防止食品污染，并符合保证食品安全所需的温度等特殊要求，不得将食品与有毒、有害物品一同贮存、运输； （五）具有经过食品安全培训、符合相关条件的食品安全管理人员，以及与本单位实际相适应的保证食品安全的规章制度； （六）用水应当符合国家规定的生活饮用水卫生标准。 第十条 从事饮用水供应的，应当符合下列要求： （一）建立生活饮用水卫生管理制度； （二）水质应当符合国家规定的生活饮用水卫生标准； （三）供水设备应当运转正常，并按照规定的期限清洗、消毒； （四）供水设施在规定的卫生防护距离内不得有污染源，生活饮用水水箱必须专用，与非饮用水不得相通，必须安全密闭、有必要的卫生防护设施； （五）与生活饮用水直接接触的供水设备及用品，应当符合国家相关产品标准，无毒无害，不得污染水质； （六）具备感官指标和余氯、PH值等常用理化指标检测能力； （七）自备水源供水设施与城镇公共供水管网不得有任何连接； （八）二次供水设施与城镇公共供水管网不得直接连接，在特殊情况下需要连通时必须设置不承压水箱； （九）集中式供水应当有水质消毒设备。 第十一条 从事国境口岸公共场所经营的，应当符合下列要求： （一）有固定的营业场所，根据经营规模、项目设置清洗、消毒、保洁、盥洗等设施设备和公共卫生间，并保证各项设施运转正常，禁止挪作他用； （二）设立卫生管理人员，具体负责本公共场所的卫生工作，建立卫生管理档案和卫生管理制度； （三）水质符合国家规定的要求； （四）应当配备有效的医学媒介生物控制措施及废弃物存放专用设施； （五）室内空气质量和微小气候及提供的用品、用具应当符合国家卫生标准和要求，采用集中空调通风系统的，应当符合集中空调通风系统相关规定的要求； （六）应当设置醒目的禁止吸烟警语和标志。 第十二条 生产经营者还应当符合法律、法规规定的其他要求。第三章 许可程序第一节 申 请 第十三条 每个具有独立固定经营场所的国境口岸食品生产、食品销售、餐饮服务、饮用水供应、公共场所经营单位应当作为一个卫生许可证发证单元，单独申请卫生许可。 第十四条 从事国境口岸食品生产、食品销售、餐饮服务的，申请卫生许可时，应当提供以下材料： （一）卫生许可证申请书； （二）营业执照复印件； （三）法定代表人（负责人或者经营者）资格及身份证明（委托他人代为办理的，应当同时提交委托书及受委托人身份证明）； （四）与本单位实际相适应的保证食品安全的卫生管理制度，包括环境清洁卫生管理制度、食品安全自查管理制度、食品进货查验记录制度、从业人员健康管理制度等有关资料； （五）其他材料： 从事食品生产的，应当提交场所及其周围环境平面图、生产加工各功能区间布局平面图、生产工艺流程图、设备布局图；食品生产设备设施清单；食品生产的执行标准；具备资质的检测机构出具的生产用水卫生检验报告等。生产加工过程食品安全管理制度、出厂检验记录制度、不合格产品管理制度。航空配餐企业还应当提供符合冷链运输要求的专用食品运输车辆、冷冻冷藏设施的证明材料。 从事食品销售，应当提交与食品销售相适应的经营设施空间布局平面图、经营设施设备清单。从事入/出境交通工具食品供应的，还应当提供符合冷链运输要求的专用食品运输车辆、冷冻冷藏设施的证明材料。利用自动售货设备进行食品销售的，申请人还应当提交自动售货设备的产品合格证明、具体放置地点，经营者名称、住所、联系方式、食品经营许可证的公示方法等材料。 从事餐饮服务的，应当提交经营场所和设备布局、加工流程、卫生设施等示意图；具备资质的检测机构出具的用水卫生检验报告；设施设备卫生管理制度、清洗消毒制度、加工操作规程、食品添加剂的管理制度；有送餐服务的，应当提供符合保温或者冷链运输要求的专用食品运输设施的证明材料。 集中用餐的非盈利性食堂可免予提供营业执照，但应当提供场所合法使用证明。 第十五条 从事饮用水供应的，申请卫生许可时，应当提供以下材料： （一）卫生许可证申请书； （二）营业执照复印件； （三）法定代表人（负责人或者经营者）资格及身份证明（委托他人代为办理的，应当同时提交委托书及受委托人身份证明）； （四）本单位卫生管理制度，包括从业人员卫生培训，专（兼）职卫生管理人员，供水设备设施维护，卫生管理档案等有关内容； （五）涉及饮用水卫生安全产品的卫生许可批件； （六）设计图纸及相关文字说明，如平面布局图、设备布局图、管网平面布局图、管网系统图等； （七）具备资质的检测机构出具的一年内水质检测合格报告； （八）自备水源的应当提供制水工艺流程文件。 第十六条 从事国境口岸公共场所经营的，申请卫生许可时，应当提供以下材料： （一）卫生许可证申请书； （二）营业执照复印件； （三）法定代表人（负责人或者经营者）资格及身份证明（委托他人代为办理的，应当同时提交委托书及受委托人身份证明）； （四）本单位卫生管理制度，包括从业人员卫生培训，专（兼）职卫生管理人员，卫生设施设备维护，公共场所危害健康事故应急，卫生管理档案等内容； （五）营业场所平面图和卫生设施平面布局图； （六）公共场所卫生检测或者评价报告； （七）使用集中空调通风系统的，应当提供集中空调通风系统卫生检测或者评价报告。 第十七条 法律、法规有其他要求的，应当按照要求提交相应的材料。 第十八条 申请国境口岸卫生许可的申请人（以下简称申请人）可以当面提交或者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交材料，并对材料的真实性负责。第二节 受 理 第十九条 检验检疫部门对申请人提出的卫生许可申请，应当分别作出下列处理：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行政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请人不受理；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检验检疫部门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机关申请；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5日内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五）申请事项属于检验检疫部门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检验检疫部门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应当受理卫生许可申请。 第二十条 检验检疫部门应当以书面形式决定是否受理卫生许可申请。 （一）检验检疫部门受理卫生许可申请的，应当向申请人出具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申请受理决定书； （二）不属于检验检疫部门职权范围的，出具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不予受理决定书； （三）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出具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申请材料补正告知书。 第二十一条 检验检疫部门不得要求申请人重复提供申请材料。第三节 审 查 第二十二条 检验检疫部门应当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内容的完整性、有效性进行审查。 第二十三条 申请材料经审查合格，确有必要需现场审查的，受理的检验检疫部门应当在5个工作日内成立由2名以上经培训合格的检验检疫部门卫生监督工作人员组成的卫生许可现场审查组，依据相应的法律法规及卫生安全标准，对企业的卫生状况、设备设施以及质量安全控制能力等进行现场审查，并填写现场审查监督笔录。 第二十四条 现场审查不合格且无法整改的，现场审查组应当提出不予许可意见；现场审查不合格且可以整改的，现场审查组可以要求申请人限时整改。 现场审查最长不超过1个月，且应当告知企业。第四节 决定与送达 第二十五条 检验检疫部门应当根据申请材料审查和现场审查结果，对符合条件的，作出准予行政许可的决定，应当向申请人颁发卫生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作出不予行政许可的决定，检验检疫部门应当向申请人送达质量监督检验检疫不予行政许可决定书，同时说明理由，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出行政诉讼的权利。 第二十六条 对送达申请人的各种文书，应一式二份，一份送申请人，一份由检验检疫部门存档。送达应填写送达回证，多个文书可用一个送达回证。 第二十七条 对于已办结的卫生许可事项，检验检疫部门应当将有关卫生许可材料及时归档。第五节 期限与公示 第二十八条 检验检疫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行政许可决定（现场审查和整改时间不计在内）。因特殊原因需要延长许可期限的，经本机构负责人批准，可以延长10个工作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对准予行政许可决定的，检验检疫部门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向申请人颁发卫生许可证。 第二十九条 检验检疫部门应当将许可事项、依据、条件、程序、期限以及需提交材料的目录和卫生许可证申请书示范文本等在受理办公现场公示，并定期公示卫生许可结果。第六节 变更、延续、补发 第三十条 有以下情形之一的，生产经营者应当向作出行政许可决定的检验检疫部门（以下称原发证机构）提出变更申请： （一）名称、法定代表人（负责人或者经营者）、经营范围或者地址门牌号改变（实际经营场所未改变）； （二）功能布局、工艺流程、设施设备改变，可能影响食品安全的。 原发证机构应当对申请变更内容进行审核。准予变更的，颁发新的卫生许可证，原卫生许可证号及有效期限不变。 第三十一条 生产经营者需要延续卫生许可证的，应当在卫生许可证有效期届满30日前向原发证机构书面提出延续申请。逾期提出延续申请的，按照新申请卫生许可证办理。 第三十二条 申请延续卫生许可证应当提供以下材料： （一）卫生许可证申请书； （二）原卫生许可证复印件； （三）原申请提交材料是否发生变化的说明材料（有变化的，应当补充相关材料）。 第三十三条 原发证机构受理卫生许可证延续申请后，应当对原许可的经营场所、功能布局、工艺流程、设施设备等是否有变化，以及是否符合相关规定进行审核。准予延续的，颁发新的卫生许可证。 第三十四条 生产经营者在领取变更、延续后的新卫生许可证时，应当将原卫生许可证交回原发证机构。 第三十五条 生产经营者遗失、毁损卫生许可证的，应当于遗失、毁损后60日内公开声明，并向原发证机构申请补发。第七节 终止、撤销、注销 第三十六条 检验检疫部门受理行政许可申请后，作出行政许可决定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止办理卫生许可：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卫生许可的；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本检验检疫部门职权范围的； （三）申请人未在规定期限内补正有关申请材料的； （四）申请人撤回卫生许可申请的； （五）其他依法应当终止办理卫生许可的。 第三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部门应当依法撤销被许可人取得的卫生许可： （一）检验检疫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卫生许可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卫生许可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卫生许可决定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准予卫生许可的； （五）申请人以欺骗、贿赂等非法手段骗取卫生许可证的； （六）依法可以撤销卫生许可的其他情形。 第三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部门应当依法办理卫生许可的注销手续，并予以公示： （一）卫生许可有效期届满未延续的； （二）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终止的； （三）被许可人申请注销卫生许可的； （四）卫生许可依法被撤销、撤回，或者卫生许可证件依法被吊销的； （五）因不可抗力导致卫生许可事项无法实施的； （六）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卫生许可的其他情形。 第三十九条 因卫生许可所依据的法律、法规、规章修改或者废止，或者准予行政许可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等原因，确需变更或者撤回被许可人取得的行政许可，由准予行政许可的检验检疫部门作出变更或者撤回行政许可的决定。第四章 监督管理 第四十条 卫生许可证样式由国家质检总局统一规定，有效期为4年。 第四十一条 在国境口岸范围内开展临时性生产经营活动的应当申请办理临时卫生许可，临时卫生许可证有效期不超过半年。 第四十二条 卫生许可证统一使用电脑打印，卫生许可证统一15位数字编号，格式为：发证机构代码（4位）+年份号（后2位）+分类号（5位）+证书流水号（4位）。  分类号第一位数字代表食品生产，第二位代表食品流通（含交通工具食品供应），第三位代表餐饮服务，第四位代表生活饮用水供应，第五位代表公共场所，从事的经营类别以数字“1”表示，不从事的经营类别以数字“0”表示。证书流水号是指不分类的证书流水号。 第四十三条 卫生许可证不得涂改、出租、出借、非法转让、倒卖。 生产经营者应当按照许可范围依法经营，并在经营场所醒目位置悬挂或者摆放卫生许可证。 第四十四条 上级检验检疫部门发现下级检验检疫部门违反规定实施卫生许可的，应当责令下级检验检疫部门限期纠正或者直接予以纠正。 第四十五条 检验检疫部门及其工作人员履行卫生许可职责，应当自觉接受生产经营者以及社会的监督。  检验检疫部门接到有关违反规定实施卫生许可的举报，应当及时进行核实；情况属实的，应当立即纠正。第五章 法律责任 第四十六条 食品生产经营者有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行为的，由检验检疫部门依照《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进行处罚。 食品生产经营者超范围从事生产经营活动的，由检验检疫部门依据情节轻重处以两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七条 食品生产、食品流通、餐饮服务、饮用水供应经营者有下列行为的，应当承担以下法律责任： （一）申请人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真实情况的，检验检疫部门不予受理或者不予许可，并给予警告，申请人在一年内不得再次申请卫生许可。 （二）申请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卫生许可的，检验检疫部门应当依法给予行政处罚，申请人在三年内不得再次申请卫生许可；涉嫌构成犯罪的，移交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三）对涂改、出租、出借、非法转让、倒卖有效卫生许可证的，直接吊销卫生许可证，负责的主管人员自处罚决定作出之日起五年内不得从事食品生产、食品流通、餐饮服务、饮用水供应经营单位的管理工作。 第四十八条 公共场所经营者有下列行为的，实施相应的处罚： （一）对未依法取得卫生许可证擅自营业或者超范围经营的，由检验检疫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以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1. 擅自营业曾受过检验检疫部门处罚的；2. 擅自营业时间在3个月以上的；3. 以涂改、出租、出借、非法转让、倒卖、伪造的卫生许可证擅自营业的；4. 提供虚假材料、隐瞒经营活动真实情况或者拒绝提供真实材料的。 （二）有下列情形之一的，由检验检疫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可处以二千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造成公共场所卫生质量不符合卫生标准和要求的，处以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依法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卫生许可证：1. 未按照规定对公共场所的空气、微小气候、水质、采光、照明、噪声、顾客用品用具等进行卫生检测的；2. 未按照规定对顾客用品用具进行清洗、消毒、保洁，或者重复使用一次性用品用具的。 （三）经营者对发生的危害健康事故未立即采取处置措施，导致危害扩大，或者隐瞒、缓报、谎报的，由检验检疫部门处以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可以依法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卫生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九条 检验检疫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在卫生许可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追究相关法律责任。第六章 附 则 第五十条 本办法所称的国境口岸，是指人员、行李、货物、集装箱、交通工具、物品和邮包入境或出境的国际关口，以及为入境或出境的人员、行李、货物、集装箱、交通工具、物品和邮包提供服务的单位和区域。 本办法所称入/出境交通工具食品供应，是指除航空配餐食品供应以外，为其他国际通行交通工具（如船舶、列车等）供应食品的行为。 第五十一条 本办法自2016年7月1日起施行。生产经营者在本办法施行前已经取得《国境口岸食品生产经营单位卫生许可证》《国境口岸服务行业卫生许可证》的，该许可证在有效期内继续有效。此前相关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